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 개정이유

기존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자에 한해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행정처분을 면제하고 있는 것을, 청소년게임제공업자·일반게임제공업자·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자 또는 복합유통게임제공업자로 확대하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 개정(“24.10.22.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25.4.23.))됨에 따라 시행규칙을 개정할 필요가 있음.

2. 주요내용

가. 청소년의 신분증 위·변조 등에 대한 행정처분 면제 대상 변경(안 제26조)

- 1) 현행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자”에서 “청소년게임제공업자·일반게임제공업자·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자 또는 복합유통게임제공업자”로 확대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관계부처 협의 예정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문화체육관광부령 제 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5호의2 중 “법 제28조제3호”를 “법 제28조제1항제3호”로 한다.

제2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자”를 각각 “청소년게임제공업자·일반게임제공업자·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자 또는 복합유통게임제공업자”로 한다.

별표 5 제2호라목3) 위반사항란 3) 중 “법 제28조제3호”를 “법 제28조제1항제3호”로 하고, 같은 호 라목8)나) 위반사항란 나) 중 “법 제28조제3호”를 “법 제28조제1항제3호”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5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신,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9조(변경허가·등록 또는 신고 대상 및 절차) ①법 제25조제2항 또는 법 제26조제4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19조(변경허가·등록 또는 신고 대상 및 절차) ①----- ----- ----- ----- -----.
1. ~ 5. (생략)	1. ~ 5. (현행과 같음)
5의2. 제공게임물의 변경(일반 게임제공업 및 복합유통게임 제공업 중 청소년이용불가게임물을 제공하는 경우와 <u>법 제28조제3호</u> 단서에 따라 경품을 제공하는 경우에 한한다)	5의2. ----- ----- ----- ----- <u>법 제28조제1항제3호</u> ----- ----- ---
6. (생략)	6. (현행과 같음)
② ~ ⑥ (생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26조(행정처분의 기준 등) ①·② (생략)	제26조(행정처분의 기준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3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u>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자</u> 에 대한 행정처분을 면제한다.	③ ----- ----- ----- ----- ----- ---- <u>청소년게임제공업자·일반게임제공업자·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자 또는 복합유통게임제공업자</u> ----.
1. <u>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u>	1. <u>청소년게임제공업자·일반게임</u>

작가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한 사정이 영상정보처리시기에 촬영된 영상정보, 진술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확인된 경우

2.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자가 청소년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영상정보처리기에 촬영된 영상정보, 진술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확인된 경우

3.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자가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
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했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
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어
불송치 또는 불기소(불송치
또는 불기소를 받은 이후 해
당 사건에 대하여 다시 수사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또는
해당 사건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되어 형사재판이 진행 중
인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거
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경
우

④ 제3항제1호 또는 제2호에도 불구하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같은 항 제1호 또는 제2호

제공업자·인터넷컴퓨터게임시
설제공업자 또는 복합유통계
임제공업자-----

2. 청소년게임제공업자·일반게
임제공업자·인터넷컴퓨터게임
시설제공업자 또는 복합유통
게임제공업자-----

3. 청소년게임제공업자·일반게
임제공업자·인터넷컴퓨터게임
시설제공업자 또는 복합유통
게임제공업자-----

④ _____

